

대통령령 제 호

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검역본부장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(이하 “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(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)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배정·부여 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에 대하여 중복사용 등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사용 내역을 반드시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영역에 대한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할당을 거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동물보호관의 자격 등) ① <u>법 제8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”이 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(이하 “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을 말한 다.</u>	제27조(동물보호관의 자격 등) <u><삭 제></u>
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검역본 부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 야 한다.</u>	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 위탁) <u><신 설></u>	제2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 위탁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5 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을 검역본부장 에게 위임한다.</u>

② ~ ④ (생 략)

제31조(소속기관의 장) 법 제94조

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그 소속기관의 장”이란 검역
본부장을 말한다.

제3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

림축산식품부장관(검역본부장
을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 또는
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
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
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
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
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
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
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12.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3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

림축산식품부장관-----
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